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1.
기획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이진환 의원 외 5명(장호섭, 도하석, 남현주, 김해철, 박정환)
- 발의일자: 2025. 11. 14.(금)
- 회부일자: 2025. 11. 14.(금)
- 상정 및 의결: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2025. 12. 1.)

2. 개정이유

- 외국인유학생을 조례에 명시하고, 재외국민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창업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내 인재확보와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로 변경
- 조례에서 지원하는 외국인유학생의 범위 규정(안 제2조)
- 취업·창업 교육, 상담 및 지원 등 지원사업 확대(안 제7조1항3호)
- 조례 전반에 사용된 “외국인주민”을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으로 일괄 변경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 「고등교육법」 제34조의7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2025. 11. 14. ~ 11. 26.) 결과: 의견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 및 청년층 유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과 취업·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우리 구의 2025년 9월 말 기준 외국인주민은 13,204명(총 인구 532,213명의 2.5%)으로, 대구시 전체(38,650명)의 34.2%를 차지하고 있음. 그 중 체류자격별 현황을 살펴보면, 유학생은 5,200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39.4%임. 또한, 우리 지역 대학의 2025년 4월 1일 기준 외국인유학생 3,747명으로, 대구시 전체(4,921명)의 76.1%이며, 이 중 학위과정은 2,020명, 연수과정은 1,727명이 재학 중에 있음.
- 주요내용으로
 -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 로 변경함.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구 외국인주민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
 - 안 제2조제2호는 외국인유학생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제6호(북한이탈주민은 제외한다) 및 제7조에 해당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유학생 또는 연수생으로 명확히 정의하였음.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어 정의에서 제외함.
 - 안 제7조는 외국인유학생이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고 우리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취업·창업 교육, 상담 및 지원 규정을 명시하였음.

- 본 조례 개정은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취·창업 등 맞춤형 교육을 포함한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외국인유학생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학교, 기업,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